

## 해외 조림투자 환경과 수익성 분석에 관한 연구

— 태국을 중심으로 —

우 종 춘<sup>1)</sup> · 서 영 완<sup>2)</sup>

## Surroundings and Benefit Analysis on Overseas Planting Investment

— Case Study on Thailand —

Jong-Choon Woo<sup>1)</sup> and Yeong-Wan Seo<sup>2)</sup>

### 요 약

본 연구는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태국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수익성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태국은 정책적으로 산림률을 현재 25%에서 40%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림을 널리 장려하고 있으며, 조림과 목가공업(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은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태국에서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조림수종은 유칼리로서 특히 펄프용으로 이용할 경우 유칼리의 벌기령은 4~5년으로서 매우 짧고 IRR도 29.1~5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ABSTRACT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urroundings and benefit analysis on the planting investment of Thailand for securing a stable supply of timber through overseas planting. The results show that Thailand government is planing to increase the coverage of forest from 25% to 40%, encouraging planting over the country. More advantages and incentives are given in the investments in planting and wood-processing industries such as plywood, veneer, and chip & hard board, etc. In Thailand Eucalyptus species which are most popular in planting as they are lucratively used as a material of pulp. The Internal rate of return(IRR) in the study was ranged from 29.1% to 59.3.

*Key words : benefit analysis, overseas planting, Eucalyptus species, internal rate of return(IRR)*

- 
- 1)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경영·조경학부 : Division of Forest Management·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 2)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과학연구소 : Institute of Forest Sciences,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 I. 서론

산림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해외로부터 목재의 벌채와 도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격 또한 많은 변동을 보일 수 있는 상황하에서 이들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도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현안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요되는 목재의 약 95%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50년을 기준으로하는 장기적인 목재수급 전망에서도 총 목재수요량의 약 70%를 해외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망하에서 해외조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에서 계획하는 100만ha의 해외조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내 목재수요량의 약 50%는 해외조림지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산림청, 2000a)

열대 또는 아열대지역에 대한 해외조림의 당위성은 무엇보다도 임지 생산성과 경제적인 경영성과를 다양하게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산림청, 2000b).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유칼리나무류, 라디아타소나무, 아카시아 등은 우리나라 보다 최소 4~5배 이상의 임목생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생산기간도 4~20년 안팎으로 크게 단축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저렴한 임지가격과 노동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인 생산성은 국내와 비교하여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지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해외조림을 통해서 생산되는 목재의 수입이 활발해질 경우에 국내의 목재가격은 하향 안정될 수 있으며 이들 해외 조림목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국내재 이용이 감소되면 국내 산림에 조성되는 산림자원을 공익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조림사업은 약 60,000ha안팎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하여 자연환경 보존 및 개선에 대한 기여효과는 투자액에 비해 대단히 크고 또 상당한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관련기업체와 협조하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해외조림투자를 계획 또는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해외조림에 필요한 예산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외조림의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원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된 해외조림 실적은 계획에 비하여 대단히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조림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법인체나 개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부터 열대림을 파괴하는 주요 국가의 하나로 비난을 받아왔다(산림청, 2000b).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림사업 추진은 자연환경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인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자연환경을 보존 육성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경우에 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수반하는 산업의 해외진출과 달리 자연환경의 보존 또는 개선효과를 수반하는 해외조림은 경제적인 의미 이외에 국가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분야의 외교, 통상관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국을 대상으로 해외조림에 따른 투자환경과 수익성을 분석하여 정부의 해외조림정책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해외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태국의 산림현황과 산림정책

### 1. 산림현황

#### 1) 산림면적 개황

##### (1) 지역별 산림면적

태국은 지역적으로 북부, 동북부, 중부, 동부, 남부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북부와 동북부로 각각 16,964천ha(33.1%)와 16,885천ha(32.9%)에 달한다. 반면에 1998년 현재 산림면적은 북부지역이 7,306천ha로서 전체의 56.3%를 차지하며 동북부는 2,098천ha로 16.2%에 불과하다.

태국의 모든 산림은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지구, 보전림의 형태로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점유율을 40%로 유지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산림률은 1978년에는 33%, 1982년 30%, 1990년 26%, 그리고 1998년에는 고무나무조림지를 제외하면 25%로 감소하였으며, 산림의 대부분은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에 있다. 1988년~1998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141만ha의 산림이 감소하여 연평균 약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FAO, 1998).

태국 정부는 1989년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벌채의 전면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가난과 도벌에 의한 산림감소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벌목금지조치는 태국의 목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벌채를 증가시키도록 유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2) 임상별 산림면적

태국의 산림은 임상에 따라 열대상록림, 혼합낙엽수림, 건조 Dipterocarp 산림, 소택림, 관목림, 소나무림, 대나무림, 망그로브림으로 나누어지며,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고무나무인공림이 있다. 인공림을 제외한 임상중 열대상록수와 혼합낙엽수 및 건조 Dipterocarp 산림이 전체 산림의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열대상록림이 5,212천ha(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혼합낙엽수림과 건조 Dipterocarp 산림이 각각 4,406천ha(34.0%)와 2,681천ha(20.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수종으로는 *Dipterocarpus* spp., *Shorea* spp., *Hopea* spp. 이며, 티크(*Tectona grandis*)는 가장 중요한 수종으로 육성되고 있다.

태국은 1989년부터 천연림에서의 모든 벌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관리 및

표 1. 지역별·연도별 산림면적

(단위: 면적: 1,000ha, 비율: %)

지역	국토 면적	산림면적							
		1988		1991		1995		1998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북부	16,964	8,040	47.4	7,714	45.5	7,389	43.6	7,306	43.1
동북부	16,885	2,369	14.03	2,180	12.9	2,127	12.6	2,098	12.4
중부	2,041	1,724	25.6	1,662	24.7	1,629	24.1	1,605	23.8
동부	1,448	783	21.5	769	21.1	759	20.8	751	20.6
남부	7,072	1,463	20.7	1,345	19.0	1,246	17.6	1,216	17.1
합계	51,312	14,380	28.0	13,670	26.6	13,149	25.6	12,972	25.3

자료 : Thailand Forestry Statistics, 1999

표 2. 지역별·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1,000ha)

지역 \ 임상	열대 상록림	혼합 낙엽수림	Dipterocarpaceae	소택림	소나무림	대나무림	망그로브림	파라고무 인공림	합계
북 부	2,116	3,233	1,791	-	162	3	-	-	7,306
동북부	711	629	740	17	2	-	-	45	2,144
중 부	744	467	132	-	-	257	5	4	1,609
동 부	643	77	18	-	-	1	13	239	989
남 부	1,007	-	-	56	-	-	150	1,668	2,881
합 계	5,220	4,406	2,681	73	164	261	168	1,956	14,928

자료 : Thailand Forestry Statistics, 1999

조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태국은 현재 50만ha 이상의 인공림이 있으며, 공원 및 보전림이 전체 국토의 약 17%에 달한다.

## 2. 조림현황

조림수종으로는 향토수종인 *Tectona grandis* 가 산업용으로 가장 선호되는 수종이다. 이 밖에 *Pterocarpus macrocarpus*, *Dipterocarpus* spp., *Swietenia macrophylla* 및 *Hopea odorata* 등이 소규모 이지만 산업용으로 식재되었다. 침엽수종으로는 향토수종인 *Pinus mercusii*와 *Pinus kesiya*가 대부분을 차지하

며, 이 밖에 *Pinus caribaea*, *Pinus oocarpa*, *Eucalytus camaldulensis*, *Acacia auriculiformis*, *Casuarina* spp., *Melia azedarach*, 그리고 *Azadirachta indica* 등의 수종이 산업용 및 비산업용으로 식재되었다. 이들 중 *Tectona grandis*와 *Pinus kesiya*는 수종개량에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한편, 수종별 조림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조림시행자별 조림면적에 대한 정보는 익히 알려져 있다. 1999년까지 총조림면적은 888천ha에 이르며, 이 중 정부 예산에 의한 조림이 667,262ha로 가장 많고 양여권에 의한 조림이 146,897ha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참조).

표 3. 연도별·종류별 조림면적

(단위 : ha)

조림의 종류	1898~1996	1997	1998	1999	합계
정부예산에 의한 조림	645,184	6,203	6,592	9,283	667,262
양여권에 의한 조림	146,897	0	0	0	146,897
산림산업기구에 의한 조림	27,025	0	0	5,924	32,949
태국합판주식회사에 의한 조림	1,174	701	619	694	3,188
농업협동조합부 규정에 의한 조림	12,564	234	971	1,337	15,106
양여권 수입에 의한 조림	20,869	651	898	40	22,458
합 계	853,713	7,789	9,080	17,278	887,860

자료 : Thailand Forestry Statistics, 1999

### 3. 입업정책

산림자원이 비교적 풍부했던 과거의 산림정책은 주로 벌채활동을 규제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41의 국유림정책은 조림지의 관리와 천연림에서의 벌채허가권만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림이 황폐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산림정책이 보전과 개발 면에서 다양해졌다. 태국의 국유림정책은 산림자원의 관리 및 지속적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태국정부는 1985년 1월 제5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의 일환으로 국유림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유림정책과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태국정부는 같은 해 12월 국유림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유림정책을 승인하였다. 이 정책은 태국 산림정책의 기초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 환경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와 더불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혜택과 국가안보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림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지침을 설립한다. 또한, 산림자원과 다른 자연자원의 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산림의 관리와 개발은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이 역할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 국유림행정은 산림자원과 환경의 질적·양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한다.
- 국토의 40%는 산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국가와 민간부문은 국가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영원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의 관리와 개발에 함께 참여한다.
- 농업용지의 확대를 위하여 산림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 합당한 산림경영기술을 통하여 목재생산성

을 높인다. 또한, 개발을 할 경우 즉시 조림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시로 하여금 산촌마을을 지정하게 하고, 도마다 산림의 잠식을 막기위한 농업구역을 지정하게 한다.
- 국유림정책위원회는 정책을 형성하고 국유림을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법으로 명시한다.
- 국가는 국내 목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부문에 의한 조림을 적극 권장한다. 국유 소유지에 대한 민간부문의 조림, 한계농지의 조림, 가정의 소비를 위한 임지의 조성과 같은 지역공동체 임업을 권장한다.
- 경사도 35% 이상의 토지는 모두 임지로 구분되며, 여기서는 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권한 및 토지이용도 불허한다.
- 고산지대에 기거하는 소수부족들에 의한 이동경작, 산불, 그리고 개별 등 산림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률의 적용과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뇌물의 기부자와 수탁자를 모두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

「1997-2016 환경개선 및 보전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Policy and Prospective Plan for 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1997-2016)」은 식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의 종다양성 관리가 이 중의 하나이다.

### 4. 산림법

태국의 산림관련법은 산림법(Forest Act, 1941), 국립공원법(National Park Act, 1961), 보전림법(National Reserved Forest Act, 1964), 야생동물보전및보호법(Wildlife Reservation and Protection Act, 1992), 조림법(Forest Plantation Act, 1992) 등 5개의 개별법이 있다. 이중 산림법은 기본법으로 공한림(unoccupied forestland)에서의 모든 활동을

통제한다. 또한, 벌채, 운송, 제재 및 판매를 관장한다(FAO, 1998).

국립공원법은 국립공원의 지정,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의 보호 및 유지, 그리고 처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보전림법은 보전림의 지정, 통제 및 유지, 그리고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야생동물보전및보호법은 총칙, 야생동물보전및보호위원회, 수렵, 홍보, 야생동물의 처리 및 거래, 야생동물육의 생산, 수출입, 야생동물원, 수렵금지구역, 직원, 그리고 처벌조상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조림법은 조림지의 지정, 민간조림권의 등록, 소유권 및 산림제품에 대한 로열티의 면제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임업공동체법(안)(Community Forestry Bill)이 구상 중에 있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첫째, 이 법안은 토지의 소유권을 명시하거나 부여하기 보다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해야 하며, 둘째,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셋째, 지역공동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림을 보호, 이용 및 개발해야 하며, 넷째,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국가발전을 일구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와 NGO 간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국가가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없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5. 산림보호조치

태국내 대부분의 국립공원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은 원래 목재생산의 증진과 산촌형성을 위한 보전림으로 지정되었으며, 벌채허가권이 자주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1989년까지 목재회사는 보호구역내에서 벌채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다. 결국 산림의 잠식이 계속되었고 상당한 면적이 매년 사라졌다(FAO, 1998).

태국은 이러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보전지역을 새롭게 지정하였다. 즉, 산림과 생물종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국은 국토의 약 16.9%에 달하는 14,120천ha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식물원, 비수렵지구, 야생

동물보호지구, 그리고 망그로보호림을 포함한다. 이 중 국립공원과 야생동물보호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산림에서의 벌채를 금지시키는 주요 수단이다.

국립공원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62년에 최초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다. 1985년의 국립공원정책은 전국토의 40%를 산림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989년 벌채를 금지하면서 보전림과 경제림을 각각 25%와 15%로 수정하였다. 경제림은 비록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보호되고는 있지만 개발을 위하여 설정되었다.

왕립산림부(Royal Forest Department)는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법을 강화하여 산림순찰과 법률시행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산악지와 고지대에서의 이동경작을 제한하는 한편, 산림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태국 전역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는 가난과 보전구역경계 표시의 부재이며 이 때문에 순찰과 법률시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예산을 규정한 날로부터 3~5년이 늦어지는 등 급증하는 보전구역과는 달리 예산배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 부처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예를 들어, 도로건설과 군부대시설 등)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단지 제한된 지역만이 경영계획을 갖고 있으며, 기술자와 자금도 부족하다. 보전지역 내에서 연구 및 자원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금도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보전지역에 대한 주된 위협은 밀렵과 경작지 개간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이다. 때문에 공원과 야생동물보호구역은 저지대의 산림보다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고산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1975년 태국정부는 산림잠식과 정착에 의해 황폐되고 있는 보전림을 산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산촌주민에게 그 지역에서 영원히 거주할 권리를 주는 한편 더 이상의 산림파괴를 막기 위함이었다. 약 474,000가구가 770,000ha의 산림을 점유하면서 이 계획에 참여하였다. 북부지역의 구릉지대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농업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비슷한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 III. 태국의 투자환경<sup>1)</sup>

#### 1. 관세장벽

태국의 평균 관세율은 1997년 5.5%에서 2000년에는 5.0%로 낮아졌다. 이 평균관세율은 태국의 전체 수입액에 대한 관세징수액의 비율이기 때문에 태국 정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관세부과가 면제되는 상품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6단계(0%, 1%, 5%, 10%, 20%, 30%)의 세율구조를 2000년부터 3단계(0%, 1%, 10%)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동안 한시법령(97. 10. 14~99. 12. 31)으로서 관세율 5% 이상의 모든 수입물품에 부과하였던 수입관세의 10%에 해당하는 특별과징금(Special Surcharge)를 1999년 10월 8일 전면 폐지하였다.

태국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협정에 의해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2002년까지 무역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역내 우선 적용 관세율을 0~5%로 인하하여 북미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U 수준의 무역자유화지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간 수출의 59%를 기계와 가정용 전자제품이 점하고 있고 그밖에 석유, 기초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아세안 역내 공업화와 역내 국가간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진전되면, 향후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 차별화의 영향이 커질 것이며 WTO에 의한 최혜국대우가 아세안 역내 공동특혜관세(CEPT)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물품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태국 세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WTO가 권고하는 신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 2. 투자진출분야 제한

투자유치는 장려하는 입장이나 지분제한, 업

종·품목별 투자제한, 입지제한이 남아있다. 1999년 10월 개정하여 2000년 3월 3일 시행된 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에는 3개 그룹의 외국인 업종참여 제한이 있다.

그룹 I은 태국인이 50% 이상 취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50% 미만의 지분참여만 허용되는 경우이다.(제8조 1항) 대상업종은 ①신문, 라디오, TV방송, ②쌀농사, 다른 곡물경작, 목초재배, ③축산, ④삼림 및 목재가공, ⑤어업, ⑥태국약초 채취, ⑦태국 고대풍습이나 문화재에 대한 거래나 경매, ⑧불상 및 절에서 사용하는 접시의 제조, ⑨부동산거래 등이다.

그룹 II는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고 내각의 동의로 75%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대상업종은 ①국가의 안전과 안보관련 산업, ②육상, 해상, 공중수송(국내항공 포함), ③예술, 문화, 관습, 수공예에 영향을 주는 사업, ④자연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

그룹 III은 외국인지분 50% 미만은 승인없이 가능하나, 50% 이상은 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대상업종은 ①정미, 도정공장, 제분, ②어업, 수산, ③조림, 임업, ④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 제조, ⑤석회(Lime) 제조, ⑥회계산업, ⑦법률서비스, ⑧건축, ⑨엔지니어링, ⑩특수건축, 중개인, 경매, 국내농산물 또는 국내상거래, 소매, 도매, 광고, 호텔, 여행사, 음식, 식물번식, 기타 서비스이다.

태국 내각은 2000년 5월 31일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진흥책을 승인하였다. 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원자재 및 시설재 수입관세의 감면과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인에 대한 법인의 소유제한 상향인정, 부동산 소유제한 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대신 태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생산제품의 품질수준, 최저투자자본 규모, 개발낙후 지방에 대한 투자장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3:1), 매출대비 태국내 부가가치 비율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인센티브제도도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태국의 투자환경은 KOTRA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 내국민 대우상의 문제

외국인은 부동산과 법인주식의 49%이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개발사업은 외국인에게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투자청(BOI)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영주권자,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거용 1주택(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가 제한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에 상관없는 외국인의 주식 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나 업종별,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소유한도가 있다. 대주주인 경우에도 외국인은 총주식 지분의 49%이내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다. 투자청이 국가경제 정책 목적상 허용한 경우에만 50%이상의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50%이상 소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다만, 금융기관은 10년 경과후 외국인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50% 초과지분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음)

### 4.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외국기업이 태국주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개설허가 취득이 필요하다. 또한, 태국 정부가 현재 상사주재원에 대한 고용허가(Work Permit) 발급에 애로가 있다(기타 장벽에서 후술). 지사 설치에는 신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최소자본금(유입·외환) 3백만바트를 반입해야 한다.

### 5.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연

태국 세관당국의 관세환급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신청 30일내에 환급금 지급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세환급업무의 전산화 미비로 환급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환급 민원해소 방안으로 환급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Gold Card 및 우량업체 제도를 신설하여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특혜를 부여

하고 있다. 1999년말까지 전체적으로 약 100개 업체가 Gold Card 업체로 선정되었고, 한국 업체도 1개 업체가 포함된 바 있다. 또한 태국 국세청에 의해 신설된 부가세 환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 6.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투자청의 투자 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 취득이 인정된다. 또한 투자장려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하다.

### 7. 경쟁정책

태국은 1999년 5월 1일 기업경쟁법(Business Competition Act, B.E.2542)을 제정·발효시켰다. 동법의 발효로 인해 독점, 불공정경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합병 및 공동행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화·서비스 가격의 부당한 책정, 수량제한 행위, 타기업 경영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체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IV. 조립투자의 수익성 분석<sup>2)</sup>

### 1. 조사지 개요

태국 Nakhon Pathom 道の Phanom Thuan지역은 수도 방콕의 서쪽으로 약 130km

2) 태국에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조립수종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수종은 유칼리이다(Waraporn Sereerat, 1998). 본고의 수익성분석은 필자가 태국의 Siam社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조립투자는 같은 수종이라 할지라도 위치, 경사도, 임도밀도, 자본장비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많은 표본을 토대로 수익성분석을 하여야 하나 본 분석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 때문에 세 개의 표본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4. 조립비용 내역

사업연도	사업내용	최저	평균	최고
1	- 근주제거(\$/ha)	0	50	114
	- 묘목구입(\$/ha)	41	41	41
	- 조립지 준비(\$/ha)	44	45	46
	- 경계구분(\$/ha)	4	4	4
	- 식재(\$/ha)	31	32	33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태국 굴지의 산림회사인 Siam社의 펄프 및 제지공장시설과 묘포장과 조립지가 있다. 1994년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64,000ha의 면적에 유칼리(*Eucalyptus camadulensis*)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회사가 소유하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26,000ha이고 농부를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38,000ha이다. 그리고 묘목생산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5백만그루를 생산하고 뿌리절단을 통해서 1천5백만그루를 생산하고 있다. 35명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여 묘목의 활착율을 85%까지 증진시켰으며 장차 90%까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평균성장량(MAI)은 2000년 현재 14.5ton/ha/년이고 2004년부터는 25ton/ha/년으로 증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본 회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유칼리나무 인공조립지의 평균 벌기령은 4~5년으로 다른 열대지방보다도 2~3년 더 빨리 수확이 가능하여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유칼리 수종의 수익성 분석

다음은 Siam 목재회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유칼리나무의 수익성분석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조립비용

유칼리의 조립비용은 근주제거비용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근주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나무가 없는 일반 소작농 소유의 밭이나 개활지에 조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주를 제거하는 경우는 벌채가 이루어진 기존의 조립지에 조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태국의 면적단위(Rai, 1ha=6.25Rai)와 화폐단위(Baht, 1\$=43.75Baht)를 환산하면 근주 제거비용은 최소 50\$/ha에서 최고 114\$/ha에 달한다.

조립은 3×2m 간격으로 ha당 약 1,800본을 식재하며 묘목구입비용은 41\$/ha, 식재비용은 31\$/ha이 소요된다. 조립지준비는 두번에 걸친 땅고르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최소 44\$/ha에서 최고 46\$/ha이 소요되며, 조립지의 경계를

표 5. 관리비용 내역

사업연도	사업내용	비용
1	- 하예작업(\$/ha)	31
	- 시비(\$/ha)	57
2	- 하예작업(\$/ha)	31
	- 시비(\$/ha)	79
3	- 하예작업(\$/ha)	11
	- 산불방지(\$/ha)	6
1,2,3,4		

표 6. 유칼리나무의 조림비용 및 임목생산성

사업연도	사업내용	최저	평균	최고
1	○ 조림			
	- 근주제거(\$/ha)	0	50	114
	- 묘목구입(\$/ha)	41	41	41
	- 조림지 준비(\$/ha)	44	45	46
	- 경계구분(\$/ha)	4	4	4
	- 식재(\$/ha)	31	32	33
○ 관리비	- 하예작업(\$/ha)	31	31	31
	- 시비(\$/ha)	57	57	57
2	○ 관리비			
	- 하예작업(\$/ha)	31	31	31
3	- 시비(\$/ha)	79	79	79
	○ 관리비			
4	- 하예작업(\$/ha)	11	11	11
	○ 벌채비(\$/ton)	41	41	41
5	○ 운반비(\$/ton)	34	34	34
	○ 관리비			
6	- 하예작업(\$/ha)	31	31	31
	- 시비(\$/ha)	57	57	57
7	○ 관리비			
	- 하예작업(\$/ha)	11	11	11
8	○ 벌채비(\$/ton)	41	41	41
	○ 운반비(\$/ton)	34	34	34
전기간	○ 임지사용료(\$/ha)	20	20	20
	○ 산불방지(\$/ha)	6	6	6
4, 8	○ 생산량(ton/ha)	94	94	94
	○ 가격(\$/ton)	257	257	257

표시하기 위하여 말뚝을 설치하는 비용은 4\$/ha 이 소요된다.

## 2)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하예작업과 시비 그리고 산불방지 비용으로 구분된다. 하예작업은 조림이 시작되는 해부터 3년까지 계속되며, 잡초제거와 땅일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31\$/ha이 소요된다. 시비는 조림1차년도와 2차년도에 시행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비와 비료구입비로 구분되며, 나무 1그루 당 250그램을 시비한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비용은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방화수림대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3) 벌채비용

벌채비용에는 임목벌채와 운송비용으로 구분되며, 임목벌채비용은 톤당 2.74\$이 소요되고 운반비용은 100km를 기준으로 톤당 약 2.3\$이 소요된다.

## 4) 임지사용료

태국의 임지사용료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태국의 경제사정과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임지사용료가 20\$/ha이므로 이에 준하여 계산하였다.

## 5) 목재가격 및 생산량

조림 4차년도 유칼리나무의 목재가격은 2000

년 현재 톤당 약 17\$이며, 생산량은 ha당 약 94톤에 이른다.

6) 2차 비용 및 생산

태국의 유칼리는 벌기령이 4년이며 5년차에는 맹아갱신을 하므로 4년차와 8년차 두 번에 걸쳐 수확한다. 따라서 두 번째 운벌기에는 조림비용이 필요 없고 7년차에 약도 간벌을 제외한 모든 작업내용은 이전의 작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7) 수익성 분석결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4-3과 같다.

위의 투자분석표를 근거로 계산한 유칼리나무의 IRR은 첫 번째 벌기령의 경우 최소 29.1%에서 최고 46.7%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벌기령을 포함할 경우 최소 38.5%에서 최고 59.3%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태국의 조림투자환경과 수익성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국은 정책적으로 산림률을 현재 25%에서 40%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림을 널리 장려하고 있다. 또한, 조림과 목가공업(합판, 베니어, Chip board, Hard board)은 그룹 III에 포함시켜 최소한의 투자요건을 요구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둘째, 태국에서는 지형적 조건 및 기후조건을 고려해 볼 때, 북부지역은 티크(*Tectona grandis*)와 열대지방 소나무(*Pinus caribaea*, *Pinus oocarpa*, *Pinus tecunumanii*)가 잘 자라고, 북동지역에서는 유칼리(*Eucalyptus camaldulensis*)와 아카시아(*Acacia* spp.), 동부, 중부, 서부지역에서는 유칼리(*Eucalyptus*)와 아카시아(*Acacia* spp.), 남부지역은 고무나무(*Hevea brasiliensis*), Sentang(*Azadirachta excelsa*), 그리고 아카시아(*Acacias*)가 잘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림투자 적지와 조림수종의 선택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태국에서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조림수종으로는 유칼리이다. 1993년 펄프생산이 각광을 받자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민간에 토지를 임대하고 5년 거치 장기저리의 용자를 제공하는 등 산업진흥을 위하여 민간에서의 *Eucalyptus* 조림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펄프용으로 이용할 경우 유칼리의 벌기령은 4~5년으로서 매우 짧고 IRR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9.1~5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태국의 대부분의 토지는 지역주민(농부)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목적으로 대면적이 공급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국가 토지시스템위에서 농장을 확립하는 방법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보장된 가격하에 농부들과 계약농장을 확립함으로써 인공조림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들 자신의 토지뿐만이 아니라 잘 숙련된 인적자원, 기계 및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FIO(Forest Industry Organization)와 같은 국가단위 기업과 연합벤처를 확립함으로써 그들의 자본과 기술 및 경험을 이용한 조림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 용 문 헌

1. 산림청. 2000a. 산림비전 21. 6-12.
2. 산림청. 2000b. 해외조림 수익성분석에 관한 연구. 651pp.
3. 산림청. 2001. 해외조림 투자환경 및 수익성 분석에 관한 연구. 207-270.
4.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청정개발체제 논의 동향 및 활용방안. 210pp.
5. 임업연구원. 2000. 임업경제동향연차보고서. 99-114.
6. KOTRA. 2001. 태국 무역정보(<http://www.kotra.co.kr>)
7. FAO. 1998. Asia-Pacific Forestry Sector Outlook Study : Country Report - Thailand Working Paper No: APFOS

- /WP/46. Rome([www.fao.org/forestry/Thailand](http://www.fao.org/forestry/Thailand))
8. Information Office, Royal Forest Department of Thailand. 2000~2001. Thai Forestry in Perspective. 27pp.
  9. Neilson, D. A. 1998. The tree farm and managed forest industry. DANA. 328pp.
  10. Royal Forest Department, Thailand. 1999. Forestry Statistics. 153pp.
  11. The Global Mangrove Protection Website (2000) Thailand Country Profil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Mangroves(<http://www.agriaqua.ait.ac.th/mangroves/Thconten.html>)
  12.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Natural Resource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ailand (<http://www.un.org/esa/agenda21>)
  13. Waraporn Sereerat. 1998. Statistics of Woodchips, Pulp & Paper Business in Thailand. 33pp.